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93
----------	------

발의 연월일 : 2021. 1. 15.

발 의 의 원 : 강민구 의원
 김태원 의원
 이시복 의원
 강성환 의원
 김성태 의원
 윤기배 의원
 윤영애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정책 필요성 대두
- 나. 지역체육의 포스트 코로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성화에 기여
- 다.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연구, 조사의 기반마련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마케팅” 정의 신설 (안 제2조제9호 신설)
- 나. “스포츠마케팅의 진흥” 신설 (안 제7장 신설)
- 다. 스포츠 마케팅 시책 및 경비지원기반 신설 (안 제31조 ~ 제32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 2] 참조
- 다. 예산조치 : 협의필요

[붙임 1]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스포츠마케팅의 진흥”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하고,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스포츠마케팅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3.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제공
4.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8.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 style="margin-left: 20px;">1. ~ 8.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9.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제2장 ~ 제6장(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제7장 보칙</p> <p><신설></p>	<p>제2장 ~ 제6장(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제7장 스포츠마케팅의 진흥</p> <p style="margin-left: 20px;">제31조(스포츠마케팅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신설></p>	<p style="margin-left: 20px;">제3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40px;">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p> <p style="margin-left: 40px;">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p>

<p><u><신 설></u> <u>제31조 ~ 제35조</u> (생략)</p>	<p><u>3.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제공</u> <u>4.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u>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u> <u>제8장 보칙</u> <u>제33조 ~ 제37조</u> (현행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p>
---	---

[붙임 2]

관계법령

「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공동제작
2.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